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나200102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나20010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18가합5777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진욱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전태진

변론종결 2022. 7. 8.

판결선고 2022. 7.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18가합57774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표 기재 '인정금액'란 해당금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517,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피고와 C[D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표 기재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금액'란 해당금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29,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1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529,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2 예비적 청구: 피고와 C[D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제2, 3 예비적 청구금액'란 해당금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45,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3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345,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에서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 2 부동산 목록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8쪽 하6행부터 10쪽 1행까지[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를 다시 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다른 원인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툼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아닌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그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부부 사이의 금전 지급행위의 경우,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 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고 갈 수 있는 관계인바, 이러한 당사자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전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계좌의 관리 주체와 방법, 금전 지급행위의 목적과 부부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 부부의 재산형성에 피고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지 등도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별지 표 순번 6 내지 9 [부동산 매수자금 부분]: 인정

을 제11호증, 제1심 법원의 G은행 및 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6. 2. 23. E,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6억 6,8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6억 300만 원은 2016. 3.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C는 2016. 2. 23. 피고에게 3,1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매도인 E에게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C는 2016. 3. 10. 피고에게 1억 2,1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4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잔금 6억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2채의 부동산¹⁾을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반면 C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아파트 또는 그 매수자금을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별지 1 표 순번 7[2016. 2. 29.자 1,000만 원]에 관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기 직전에 이체된 뒤 2016. 3. 10. 위 금원을 포함한 액수의 금원(127,217,650원)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잔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금원 지급내역은 이 사건 아파트 부동산 매수자금으로써 C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별지 표 순번 1 내지 5, 10 내지 13 [주식 투자대금 부분]: 일부 인정

제1심 법원의 G은행, H은행 및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에 의하면, ① C는 별지 1 표 순번 1 내지 4, 10, 11, 13 각 해당 일자에 해당 금원을 피고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 ② 피고는 순번 1 중 500만 원, 순번 4 중 500만 원, 순번 10 중 200만 원, 순번 13 중 10만 원 합계 1,2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체금액을 피고 명의의 주식거래를 위한 I 위탁계좌로 이체한 사실, ③ 한편 피고의 위 G은행 계좌는 렌탈비, 보험료, 가스대금, 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 등 생활비 지출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위 1,210만 원도 위와 같은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④ C는 2015. 12. 14. 3,000만 원, 2016. 7. 1. 630만 원을 피고 명의의 I 위탁계좌에 직접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및 주식거래 위탁계좌 등 주요 재산의 명의가 부부 중 일방인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C가 피고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그 계좌에 남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1,2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 C가 피고에게 주식 투자대금으로써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이체된 부분[별지 표 순번 5, 7, 9, 10, 12, 13]은 마이너스 대출한도에서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금원지급행위로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이너스 대출 계좌는 대출한도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하는 것인바 C가 무자력 상태에서 마이너스 대출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증여하는 행위는 소극재산인 마이너스 대출채무를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 당시 C가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C는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표 1기재 “인정금액”란 기재 합계 517,010,000원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으로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제1심 판결문 11쪽 9~17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11쪽 하4행부터 12쪽 7행까지[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및 소결론]를 다시 쓴다.

『라.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증여받은 금액은 517,010,000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금만 하더라도 9억 7,200만 원에 이르는바,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할 금액은 517,010,000원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따른 각 증여계약은 517,01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손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517,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12쪽 7행과 8행 사이에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2) 원고는 예비적으로,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거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서 해당금원을 대여하였는바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내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의사였다고 보일 뿐 명의신탁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서 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양시훈, 판사 정현경

별지

1) 경산시 소재 Q아파트(거래가액 2억 2,000만 원), 울산시 소재 R아파트(거래가액 1억 5,000만 원), 을 제2호증의 1, 2

2)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취지의 양적으로 감축하는데 불과한

청구는 주위적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선고 2015다65042 판결참조). 제2예비적 청구취지는 주위적 청구취지의 양적 감축에 불과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에서 제2예비적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을 인용한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3예비적 청구취지는 제1예비적 청구취지의 양적 감축에 불과하므로 제1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만 살핀다.